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약관

# 제1조 약관의 적용

- 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저축'이라 한다) 거래는 이 약관 및 예금거 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주택도시기금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국고금 관리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및「주택도시기금포탈(nhuf.molit.go.kr)의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 안내페이지에 제공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고객 요청 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라인」은 영업점 창구에서도 제공합니다.

# 제2조 가입대상

- ① 이 저축의 가입대상은 만 19 세 이상 만 34 세 이하의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다음 각목의 소득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가. 직전년도의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제외)이 3 천 6 백만원 이하이고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고객. 단, 직전년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을 인정합니다.
    - 나. 직전년도 또는 가입연도의 소득증빙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소득자로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 총수입금액을 연환산한 금액이 3 천 6 백만원 이하인 고객
  - 2. 다음 각목의 세대주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가.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 나.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세대주(연 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일 것
    - 다. 가입자가 무주택세대(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일 것
- ② 이 저축의 가입시점에 가입대상의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 또는 사업 영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 ③ 이 저축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합니다.

#### 제3조 납입기간

이 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합니다.

#### 제4조 월 납입금

이 저축의 월 납입금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합니다. 다만.

월 납입금의 총액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대 한도인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이자 등

- ① 이 저축의 이자는 입금한 월 납입금에 대하여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실예치일수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이 저축은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제2조 ①항 2호 나목의 세대주 요건을 동 저축 해지 전까지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 우대이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6조 지급시기

이 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가입자가 이 저축을 해지할 때 일시에 지급합니다.

#### 제7조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제2조의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 이 저축으로 전환신규가 가능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을 인정합니다.

# 제8조 계좌부활

이 저축을 사용하여 당첨자로 선정되어 해약한 자가 사업주체의 파산으로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될 경우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부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저축이 아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소득공제

이 저축은 소득공제 가능한 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10조 양도 및 질권설정

이 저축은 양도하거나 제3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제11조 기타

이 저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부 칙

변경일	내용	관련조항	기가입고객 적용여부
2018.07.31.	제정	제1조 ~ 제10조	제정
2019.01.02.	변경	제2조, 제5조	미적용
2021.03.25.	제정	제11조	적용
2022.01.03.	변경	제2조	미적용